# 第6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 형 규

## 1. 회의 개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제4작업반')의 제66차 회의가 2023. 10. 16.부터 10. 20.까지 비엔나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2개 회원국과 이집트,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등 13개 옵저버 국가의 정부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LI(American Law Institute), ELI(European Law Institut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contracting)' 및 '데이터 제공 계약(data provision contracts)'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원칙 규정을 토대로, '데이터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조문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 주요 논의 사항

### 가.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 1) 제1원칙 계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자동화된 시스템과 그 사용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제1원칙의 규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원칙은 계약에 자동화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조건 생성을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계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

한 것이 아니며, 자동화 시스템이 계약의 여러 단계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외 정의와 용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원칙 법적 효력

제2원칙은 계약의 형성 및 이행 등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성 및 처리되는 동적 정보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원칙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사무국이 제안한 원칙 규정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3) 제3원칙 기술중립성

제3원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기술중립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4작업반은 자동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4) 제4원칙 귀속

사무국이 마련한 제4원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 메시지가 원칙적으로 운영자에게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운영규칙에 따라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실체법상 효력과 관련한 데이터 귀속 개념 정립의 중요성과 제4원칙과 같이 귀속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지지가 있었으나, 제4원칙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 의견이 있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다양한 사용 사례와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 담당관, 시스템 운영자 등 다양한 역할별 고려를 통해 제4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작업반은 MLEC(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13조에 따른 당사자 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추어 제4원칙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운영규칙에 따른 귀속을 제4원칙의 첫 번째 항으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은 계약 전 과정에서의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구성하며, 귀속되는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제4원칙이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하는데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

5) 제5원칙 당사자의 의사, 인식

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적절성 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는 내용의 제5원칙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칙인지 의문이 있고, 어떻게 적용될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문구를 일부만 수정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6) 제6원칙 데이터 오류의 법적 효과

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등 계약 당사자가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제6원칙은 실제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MLEC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13조 제5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무국이 제시한 제6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7) 제7조 적용법의 준수

사무국이 제시한 제7원칙은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운영 및 사용이 해당 법을 모두 준수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 대신 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작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7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률 또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논의되었다.

### 나. 데이터 제공 계약

1) 제1조 정의, 제2조 적용범위

사무국이 제시한 제2조 중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데이터 제공 계약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데이터 계약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이지 않은 계약 유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제5조 제공방식

사무국이 마련한 제5조는 일반적 데이터 제공방식으로 ‘데이터 수신자가 지정한 데이터 시스템에 자료를 전달하거나, 데이터 공급자의 통제하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신자 또는 데이터 수신자가 지정한 사람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문구 재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데이터 제공자에게 제공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무국 제시안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정도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데이터의 능동적(예: 전송) 및 수동적(예: 접근 권한 부여)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3) 제7조 데이터의 적합성

제7조 중 데이터 제공계약 준수의 요건으로 ‘1. 계약 체결 당시 데이터 수신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린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경우(데이터 수신자가 데이터 제공자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그 의존이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데이터 공급자가 샘플 또는 모델로 제공한 데이터의 특성을 갖춘 경우, 3.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제시한 모든 설명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합법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요건들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중첩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는 다른 항목들과 병렬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 독립 조항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무국 제시안 제7조 중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데이터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부분과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구제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10조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다.

4) 제9조 파생 데이터

사무국이 제시한 제9조는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파생 데

이터의 이용목적 및 수단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데이터 제공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원칙적으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파생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파생 데이터의 경제적 중요성이 상당하므로 파생 데이터의 정의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5) 제10조 구제방법

사무국이 제시한 제10조에는 원상회복이나 가격 일부 할인 등과 같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고, 제10조 내용 중 제공자의 미이행 시 데이터 수신자의 제공 요구권 규정은 일부 법제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법에 따른 구제책에 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3. 평가 및 시사점

제4작업반은 다음 회의에서도 위 두 가지 주제를 계속 검토하되,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주제에 대해 제4작업반이 검토한 원칙을 입법 조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 UNCITRAL 규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이번 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차회 회의를 위한 조항과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제4작업반은 차회 회의에서 이를 계속 검토하고 문서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필요시 본회의에 진행 방향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4작업반의 회의 주제인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및 '데이터 제공 계약'은 디지털 시대의 생활형태의 본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도 계약 분야 법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제4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규범이 우리 현행 법제 및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 정비에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